##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01

발의연월일: 2021. 4. 15.

발 의 자:홍성국·강준현·김경만

김종민 • 노웅래 • 문정복

민병덕 • 박성준 • 오영훈

이개호 · 이장섭 · 조승래

한준호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·판촉행사 실시 이후 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세 내역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광고·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.

광고·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 부담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관련한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·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 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6의 제목 "(광고·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)"을 "(광고·판촉행사 사전동의 및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에 따른 동의 및 제2항"으로 한다.

-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비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
- 2.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비용분담을 정하 거나 미리 수령한 금원을 통하여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 우

제43조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6 <u>(광고·판촉행사</u> 관련	제12조의6 <u>(광고·판촉행사 사전</u>
집행 내역 통보 등) <신 설>	동의 및 관련 집행 내역 통보
	등)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
	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
	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
	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
	비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
	<u>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</u>
	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
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	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	1.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에 동의
	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
	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
	2.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또는
	별도의 약정에 따라 비용분담
	을 정하거나 미리 수령한 금
	원을 통하여 광고나 판촉행사
	를 실시하는 경우
<u>①</u> (생 략)	<u>②</u> (현행 제1항과 같음)
② <u>제1항</u> 에 따른 집행 내역 통	③ 제1항에 따른 동의 및 제2항
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	
·방법·절차는 대통령령으로	

정한다.

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6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⑦·⑧ (생 략)

제43조(과태료) ① ~ ⑤ (생 략) 제43조(과태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
- ⑦·⑧ (현행과 같음)